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조영식 의원 외 8명
3. 개정이유

제339회 완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2026. 7. 14.)에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완도군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위촉 근거, 위촉 절차, 임기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수정(안 제4조제2항)

나. 전문가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위촉 절차,
임기 및 수당 지급 신설(안 제14조)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6. 예고기간 : 2026. 8. 12. ~ 2026. 8. 16.(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사운영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1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전화: 061-550-5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 예산감사과, 인구일자리과”로, “가족행복과”를 “가족돌봄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광실, 경제교통과”를 “수산식품산업과, 관광과, 경제산업과”로,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를 “해양수산물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그 의결로 중요한”을 “중요한”으로, “당해 안전에 관하여”를 “그 의결로 관련 분야의”로,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를 “자를 전문가 및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가 및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위원회의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된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자치위원회 : <u>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의료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u>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 예산감사과, 인구일자리과</u> ----- ----- -- <u>가족돌봄과</u> ----- ----- 3. ----- <u>수산식품산업과, 관광과, 경제산업과</u> --- --- <u>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u> ----- ----- ----- <u>재난안전과</u> ----- ----- -----
제14조(전문가활용) ① 위원회는 <u>그 의결로 중요한</u>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u>당해 안</u>	제14조(전문가활용) ① ----- <u>중요한</u> ----- ----- ----- <u>그 의결</u>

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심사 및 사무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로 관련 분야의 -----
-- 자를 전문가 및 자문위원으

-----.

② 전문가 및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위원회의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위촉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된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